

오늘 세월호 선원 15명 선고 공판...전국민 관심 광주에 쏠린다

심판의 날

참사 210일만의 판결...살인죄 적용 여부·형량 주목

4월 16일. 300명이 넘는 승객이 선체에 갇힌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참사를 두 눈 뵈히 뜨고 지켜보아 했던 국민은 한 없이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쏟았다. '미안하다', '기억하겠다'며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며 지내 온 것도 11일로 210일이 된다.

11월 11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묻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시작된다. 슬픔으로, 고통으로 대한민국을 잠들지 못하게 했던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첫 심판이 210일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68) 선장 등 갑판부 승무원 8명과 기관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 등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선고 형량과 살인죄 적용 여부다. 선고량은 현재까지 담당 판사를 제외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적용범규로만 보면 살인죄의 경우 사형, 나머지 혐의로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점을 들어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이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한 이 선장 등 4명에 대해 적용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관례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이례적이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재난사고의 중요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억의 날

유가족 마중 사람띠잇기 행사...추모 만화전도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잊지 않겠다'던 지역민들은 그날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 100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세월호 선원 재판에 참여하는 유가족 마중길 '진실마중 사람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10일 첫 재판이 시작된 뒤로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렸던 행사다.

시민상주모임은 더 나아가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11일까지 '빛고를 1000일 순례'에 나선다. 1000일 동안 매일 시민들이 광

주지역 특정 코스를 돌면서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의다.

또 만화가 박재동·원수연 작가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세월호 추모 만화전 'Memory'를 마련, 시민들과 교감한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도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로 바라본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치유의 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연에 나서 온 국민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그리고 담화문

이주영 장관 수색 중단 입장 공식적으로 밝힐지 촉각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실종자 9명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이 장관이 담화문 형식으로 정부의 수색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판단,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수색 종료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88수중 소속 잠수사들이 수색 무용론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철수 입장을 내놓는 데도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동안 가족들이 요구해온 동철기수색대책 수립도 시간만 끌었기 때문이다. 한 실종자 가족은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이날 오전 실종자 가족에게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11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식 담화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만 전파로 간단히 전달해 왔다"면서 "사실상 수색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분명 한 것은 가족들은 수색 종료로 의견을 모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부서고대책본부는 "11일 기상 관계로 사고 해역에 있는 바지선과 잠수사들이 일시 피항하는 것은 예정돼 있다"면서도 "내일로 예정된 담화문 발표 내용과 수색 종료 선언과 관련된 정부 공식 입장은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전거 무상수리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1층 광장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수리공이 한 주민으로 부터 의뢰받은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 북구는 이날 고유가 속에서 주민들에게 친화적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해 이동식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했다. 무상수리센터 운영은 13일까지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 뿔났다

“분양가 높게 책정...수십억 부당이득 돌려달라” 반환소송

시행사 상대 줄소송 예고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뿔'났다.

해당 아파트 시행사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일반 분양 전환 당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사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예상되는 등 향후 파장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 서구 용암동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A아파트 입주민 984세대는 서구 용암동 주민센터 2층에서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입주민설명회를 연다.

입주민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준비에 나선 이유는 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한 분양산정가 상한기준을 초과해 분양가를 높게 산정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간건설사가 지난 2000년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지은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됐다. 당시 입주민들은 4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주고 세대를 우선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조만간 입주민설명회를 한 뒤 시행사를 상대로 한 세대당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A아파트와 같은 시행사인 서구 용암동 B아파트 718세대는 입주민설명회를 갖고 한 세대당 25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지난 2011년 4월)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A아파트를 짓는데 1000만 원의 표준건축비용이 책정됐더라도 실제 건축비가 500만 원 들었다면 분양가 산정은 실제 건축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산구 산월동 C아파트 입주민들은 지

난해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아파트는 극소수로 광주에만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최소 10개 단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아파트의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줄소송 제기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경남 김해시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 289명이 지난 8월 21일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결과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했다”며 “21명에게 세대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수창 전 지검장 문제’ 광주고검 시민위 결국 비공개로

광주고검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 음란 혐의와 관련, 고검 시민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고검은 10일 오전 시민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불기소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을 근거로 시간, 장소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논의 결과도 비밀에 부쳤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시민위원회 운영지침(11조) ‘위원회 심의 전에는 심의 대상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힌 점에서 ‘고무줄’ 기준이

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스스로 원칙을 허물어놓고 뒤늦게 원칙대로 ‘갓대’를 들이대는데다, 고검 시민위원회가 ‘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형법 7장(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된 사건’ 등을 다룬다는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검찰의 일관성 없는 운영 방식에 따라 수사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시민위원회의 취지마저 퇴색될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김지을기자 dok2000@

편의점 여종업원에 행패 부린 50대 “술김에...” 뒤늦은 후회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여종업원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머리

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휘두른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1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황모(55)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S편의점에서 여종업원 박모(18)양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한 혐의. ○--황씨는 음료·주류 냉장고에서 병맥주 한 병을 꺼낸 뒤 곧바로 값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여종업원이 카운터에서 구입할 물품의 바코드를 찍어야 계산이 가능하다고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술김에 그랬다”며 때늦은 후회.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신천지교회에 대한 호소문

(신천지교회) 총회에 진상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나, 지재설지파장의 죄를 덮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바른말 하는 자의 입을 막기 위해 징계를 청구하므로, 부득이 성경과 세상법과 성도들 앞에서 공의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시편 82:2))

첫째. 신천지교회는 공의 공도를 실천하여 성경대로 진리의 성음을 만들자. 지재설지파장의 부정을 덮고자 진상조사도 않고, 성경대로 공의판단을 바라는 진정은 묵살하며, 오히려 징계를 하는 것이, 과연 성경대로 이루어진 신천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렘5:미3)

둘째. 신천지교회는 전국교회재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자. 교회재정이 지재설지파장의 독단에 의해 운영되는 재정의 부정부패를 그만하고, 전국교회가 통일된 재정세부항목을 만들어, 있다가 사라지는 유령항목(잡비, 기타비용등: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없이 성도들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을 만들자.(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남비와 술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미3장))

셋째. 신천지교회는 권력과 뇌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조리한 일부 처리자 도덕성 때문에 신천지교회가 개종교육의 자료로 이용되는데, 진정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자. 지재설지파장은 머느리와 교회성도들에게 세상에서도 급하고 있는 기획부동산(경기이천 울면 본죽리 산42:맹자이며, 앞에 공동묘지존재)을 소개하여 피해를 주었고, 김모집사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항의하자 다른복음 전한다는 누명을 씌워 제명처리하고, 더 나아가 지재설지파장은 도대체 이경숙전도사와 무슨 특별이 좋은 사이 길래?(특별히 좋은사이인가?) 교회재산을 이경숙전도사 명의로 부동산(광산 우산동216-36:약2억원, 두산위브2 약 2억)을 매입 명령하여 숨기다 소문이 나자 2010년에 애매하게 교회 앞으로 인증하여 떼뺏었다고 하며, 죄를 덮고자 말씀보다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이용하여 총회장의 권력에 매달리는 목회자가 과연 주님의 참목자인가? 삼국목자인가?

넷째. 신천지교회는 비리와 횡령에 연관된자를 성경대로 심판하여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라. 이동수감사, 오오군 집사, 서오영 집사, 박오일 집사 등은 송하동 지교회가 21억의 매도 가인데 23억 9천만원까지 계속해서 부풀리다 발각되어 최종 22억에 계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

람들이 리베이트를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첫째: 21억 원에 팔겠다는데 굳이 23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동수 감사까지 가담하여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 더 주어도 된다고 말하며, 절대로 돈은 안 먹었다고 주장, 이해 가는가?), 둘째: 서득영집사가 23억 원에 물건을 빼와서 23억이라고 하는데, 이를 본 박석일집사가 이번에는 물건을 22억에 빼와서 하는 말이 "억은 문중에서 먹는다"(문중은 별도로 1억 주라하지 않음)고 하였다. 참고로 물건은 21억에 나온 지(광주 웬만한 부동산은 다 알고 있음)좀 되고, 외파이라 팔리지도 않고 문중의 골치였음. 셋째: 이동수감사는 매도 21억의 물건을 23억 9천만원까지 주어도 된다는 황당한 말과, 우리는 절대 돈을 안 먹었으니까 끝까지 밝히라~(위 사람들은 절대 돈을 안 먹지만 문중에 교회에 몇 억씩 더 주어야 한다는 말이됨~ 판단해 보라 성도와 총회장은 바보인가? 총회장에게도 안 먹었다고 주장함.(행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이다 죽었음))

다섯째. 신천지교회는 지재설지파장의 배임과 횡령으로 모은 비자금과 부동산을 교회로 환원하기를 촉구합니다. 지재설지파장은 박석일재정부장과 공모하여 재정의 유령항목(잡비, 기타잡비, 기타비용등: 사라지고 다시 창조 되는 재정항목: 항상 감사 받아서 투명재정이라고 함), 엉터리 재정으로 성도들의 눈을 속이고, 교회재정(지교회 십일조 등)을 빼돌려 가족들과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은닉하였고, 가족들 명의(딸: 두산위브 2억, 머느리: 오치주공, 경기도 기획부동산 토지, 이○속 전도사: 우산동 토지 2004년 당시 1억 9470만원)로 은닉한 현금 및 부동산 등..... 부동산 투자의 귀재(?), 재테크에 달인(?) 잘못된 것 비판하면, "징계 요구하고, 제명처리한다." 해야 하나? 위와 같은 부패와 타락에도 성경대로 육체영생 할 수 있을까요?

★ 2013. 9. 12선고 2013도8211 대법부죄판결(고법2013노285)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형법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천지는 미3장말 씌어 옹한 곳으로 부패하여 성령은 떠났으며, 유씨 장막성전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법원 무죄판결 받은 내용으로 신천지 중진 10여명이(센터원장들과 감사들) 확인하고 공유했던 사실임, 사실확인 : 2014년 11월 11일 유일한 010-6712-8004